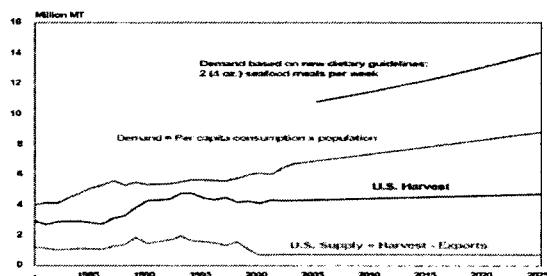


미국 외해양식업(Offshore Aquaculture)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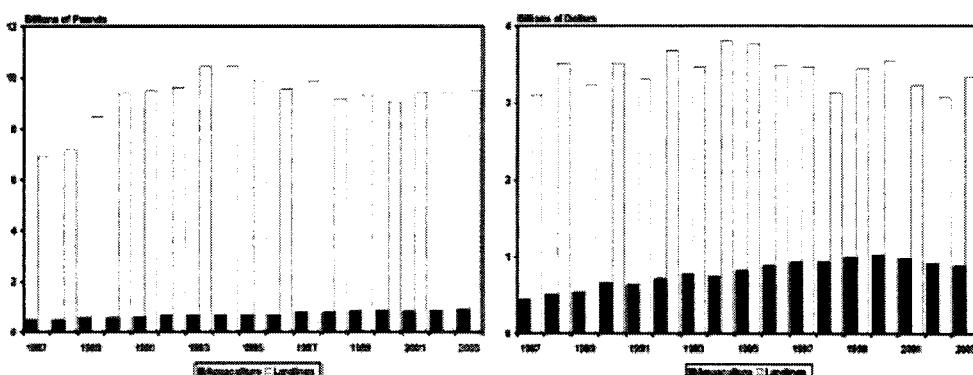
수산물 소비 증대와 양식의 필요성 제기

- 미국 해양대기청(NOAA)은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국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음
- 현재 미국 수산물 소비의 70% 이상은 수입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는데, 수입수산물의 40%이상은 양식수산물임
- 미국 국내 양식업 발전은 이러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, 낙후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현재 미국의 양식생산량은 대부분이 굴, 홍합과 같은 패류양식이 차지하고 있지만, 향후 NOAA 양식계획에는 이러한 패류양식 외에도 어류양식에 대한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



〈그림-1〉 미국 수산물 공급과 수요의 과거치와 미래 예측치

- 특히 어류양식의 발전을 위해 외해양식업(Offshore Aquaculture) 전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
- 지난 수년 동안 NOAA는 지역공동체들과 협력하여 패류양식과 어류양식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는데, 이는 양식업 발전으로부터 일자리,



〈그림-2〉 미국 해면어업과 양식업의 생산량 및 생산액 비교

- 어업소득 창출 등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
- NOAA는 양식업 발전에 따라 적어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소득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더욱이 외해양식업 발전에 따라 해면어업 어획량 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이 가능해지고, 세계 총수산물 공급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

외해양식법(안)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

- 최근 미국법에 있어서는 연방수역에 대한 상업적 양식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는 외해양식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음
- 하지만 2005년 6월 7일 미국 상무부는 NOAA가 초안 작성한 ‘외해양식법 (National Offshore Aquaculture Act of 2005)’을 국회에 제출하고,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
- ‘외해양식법(안)’에서는 상무부 장관에게 연방수역 내에서 외해양식업을 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
- 양식업으로부터 어업자원, 해양생태계 등의 환경보호, 다른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외해양식업의 환경적 영향검토 강화

- 외해양식업의 해양환경적 영향검토는 외해양식법(안)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임
- 외해양식법(안)에서는 양식 허가권제(permit system)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

- 이 외에도 예상치 못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기존 해양환경 관련법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해양환경, 어업자원,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, 해양포유류, 해양서식처 등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

외해양식업(안)에 대한 상원의회 공청회 진행 중

- 2006년 4월 6일 상원의회 해양정책소위원회에서는 상무부로부터 제출되어진 외해양식법(안)에 대한 첫 번째 공청회를 열었음
- 공청회에서는 외해양식업 운영에 관한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뉴잉글랜드지역과 하와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외해양식 시험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논의하였음
- 그리고 외해양식업 확대에 따른 해면어업 어업인, 수산물 가공업자,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음
- 이어 상원의회 해양정책소위원회는 2006년 6월 8일 외해양식법(안)에 대한 두번째 공청회를 열었음
- 공청회에서는 상원의원들이 외해양식업 발전의 필요성과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음
- NOAA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해양식업 발전이 필수적이며,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외해양식업이 행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음

외해양식에 대한 시험사업 결과 양호

- 지금까지 NOAA 기금에 의해 수중가두리를 이

- 용한 외해양식 시험사업이 뉴햄프셔, 푸에르토리코, 그리고 하와이에서 행해져 왔음
- 시험사업 결과, 외해가두리에 의한 어류양식 생산성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,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
- 특히 뉴햄프셔 지역에 있어서는 어류양식 외에 수중가두리 속에서 패류양식에 대한 시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, 어류양식 못지않게 패류양식 생산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

〈표-1〉 미국 외해양식법(안)의 주요 골자

허가권(Permits)
<p>양식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허가권을 취득해야 하는데, 하나는 배타적경제수역(EEZ) 내 양식업 운영을 위한 특정 수면에 대한 허가권이고, 다른 하나는 허가된 수면에서 특정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허가권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무부 장관은 양식 허가기간이나 내용을 규정하고, 관련비용을 정해야 함 - 양식신청자는 동시에 두 개의 허가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- 허가권은 양도가능함 - 모든 허가조건이 충족되면, 상무부 장관은 120일 이내에 최종 양식허가를 결정해야 하며, 결과에 대해서 양식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
<p>상무부 장관은 허가권 발급 이전에 연방기관들, 어업관리위원회, 주 정부, 그리고 지역공동체들과 허가권 발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무부 장관도 양식허가권 발급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음
<p>양식 허가기간은 최대 10년이고, 이후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음</p>
환경조건(Environmental Requirements)
<p>양식허가는 환경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른 수면 사용자들과의 양립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적 조건은 현행 관련 법률의 내용 외에 상무부 장관이 다른 연방기관들과의 논의 후 대두된 부수적인 조건들을 포함함 - 환경적 조건은 어업자원, 해양생태계, 수질, 서식처, 해양동식물, 그리고 다른 환경특성에 대한 영향과 위험을 고려해야 함
<p>외해양식법(안)은 연안역관리법(Coastal Zone Management Act)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, 상무부 장관은 외해양식업이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</p>
<p>상무부 장관은 양식수면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고, 양식의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, 환경적 조건에 부합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함</p>

자료 : 미국 해양대기청(NOAA)